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2. 1. 21.>

(　　)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

(앞쪽)

1. 총괄

(조사기관: ○○시・도, 시・군・구)

조사지역	조사지역수	초과지역수	초과항목수	조사항목별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수																						
				카드뮴	구리	비소	수은	납	6가크롬	아연	니켈	불소	유기인	PCB	시안	페놀	유류					TCE	PCE	1,2-디클로로에탄	벤조(a)피렌	다이옥신
																	벤젠	톨루엔	에틸벤젠	크실렌	TPH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장 및 공업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장폐수유입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원광석・고철 야적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속제련소 주변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폐기물적치・매립・소각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속광산주변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교통관련시설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고발생・민원 유발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토지개발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단주변주거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어린이놀이터지역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조사지역수: 해당 연도에 실시한 전체 조사지역수
초과지역수: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,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수(1개 조사지역에서 2개 이상의 항목이 초과한 경우 초과지역수는 1개로 계산)
초과항목수: 조사항목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수를 합산

2. 조사지역별 오염도 현황

가. 조사지역 개황

(조사기관 : ○○시・도,시・군・구)

연번	조사지역종류	조사지역 위치(지번)	토지소유자	토지지목	면적(㎡)	조사일자	분석기간	좌표	비고
								X Y	
								X Y	
								X Y	
								X Y	
								X Y	

※ 조사지역 종류: 오염원지역별 종류명
조사지역 위치(지번):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까지 기재
토지소유자: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
토지지목: 「지적법」상 지목의 종류
면적(㎡): 「지적법」상 조사대상 필지의 면적
조사일자: 시료채취일자
분석기간: 분석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분석한 기간(00.00.00~00.00.00)
좌표: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지점(중심점)의 좌표
비고: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(기준 초과, 기준 이내)
-당초 선정지점을 변경조사한 경우(변경), 추가로 조사한 지점의 경우(추가)

(뒤 쪽)

나. 토양오염도 현황

조사기관: ○○시・도, 시・군・구

연번	조사지역위치	토지지목	조사항목별 오염도(mg/kg,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-TEQ/g)																							비고
			카드뮴	구리	비소	수은	납	6가크롬	아연	니켈	불소	유기인	PCB	시안	페놀	유류					TCE	PCE	1,2-디클로로에탄	벤조(a)피렌	다이옥신	PH	
																벤젠	톨루엔	에틸벤젠	크실렌	TPH							

※ 조사지역 위치(지번): 토양조사 시료채취지역의 지번
토지지목: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소유자
조사항목별 오염도: 조사지역의 토양오염도 조사항목 전체의 오염도 분석결과
비고: 지하저장시설・매립지 등에서 표층・중간층 및 심투층으로 구분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서식 비고란에 토층별 깊이(m)를 기재

※ 이상은 표계산 프로그램(EXCEL)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시・도지사
시장・군수・구청장 직인